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1. 20.)에서
의결된 **양구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양구군의회 의장 김철



양구군의회 규칙 제 ㉞ 호

양구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직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대

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

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상 재해로 인정된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

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재직기간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

(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2.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⑥ 생년월일		⑦ 주 소		□□□-□□□		
	⑤ 성명		한 글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한 자		⑦ 주 소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소속 기관 기재란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형량:)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년 월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⑮ 정 년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형량:)						
		확인 인 사		(인)		연 금		(인) 감 사		
		담당관		(인)		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과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직인</div>			
양구군의회의장 귀하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제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의회 의장 귀하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의회 의장 귀하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4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양구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